

# 「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」 수립 보고

제출년월일 : 2008. 9. 11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수립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에 의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’ 을 수립, 정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인력조정 ⇒ **235명 증원** (일반·기능직 △77, 소방직 +312)

| 구분          | 증감계       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조정결과<br>총 계 | + 235      | + 1   | + 78  | + 112 | + 31  | + 13  |
| 소방직외        | 소계 (△77)   | △ 77  | 0     | 0     | 0     | 0     |
|             | 증원         | 11    | 15    | 13    | -     | -     |
|             | 감축         | 88    | 15    | 13    | -     | -     |
| 소방직         | 소계 (+ 312) | 78    | 78    | 112   | 31    | 13    |
|             | 증원         | 78    | 78    | 112   | 31    | 13    |

〈※조정후 정원 현황〉 →\*국가직 제외

| 구분   |         | 총 원   | 소방직 외 | 소 방 직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연도별  | 기준일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2007 | 12월 31일 | 3,123 | 2,150 | 973   |
| 2008 | 1월 1일   | 3,134 | 2,161 | 973   |
|      | 12월 31일 | 3,124 | 2,073 | 1,051 |
| 2009 | 12월 31일 | 3,202 | 2,073 | 1,129 |
| 2010 | 12월 31일 | 3,314 | 2,073 | 1,241 |
| 2011 | 12월 31일 | 3,345 | 2,073 | 1,272 |
| 2012 | 12월 31일 | 3,358 | 2,073 | 1,285 |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 
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
  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제2항 :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제4항 :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※ 제3항, 제5항, 제6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

#### 나. ‘중기기본운영계획’ : 별첨

# 中期基本人力運用計劃

(2008~2012)

大田廣域市  
政策企劃官室

## 목 차

- I. **인력운용계획 개요 / 1**
- II. **인력여건 및 전망 / 2**
- III. **계획수립 기본방향 및 원칙 / 2**
- IV. **인력조정 현황 / 3**
  - ① 연도별 인력조정 총괄
  - ② 조정결과 연도별 정원현황
  - ③ 부서별 정원요구에 따른 반영내역
- V. **일반직 · 기능직 인력증원 검토내용 / 6**
- VI. **소방직 인력증원 검토내용 / 16**
- VII. **인력감축 내용 / 21**
- VIII. **참고사항 / 24**
  - ① 인건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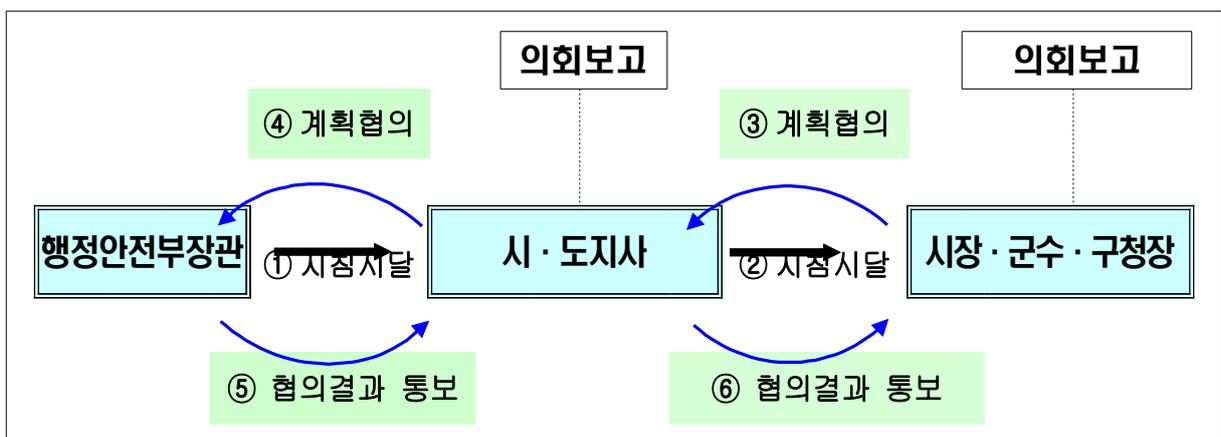
#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

-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축소 방침에 따라 유사·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감축 등 연도별 적정 인력규모 제시
-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기능 감소분야 인력을 신규업무 인력으로 탄력적으로 대체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수급계획 수립

## I. 인력운용계획 개요

- **수립근거:**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
- **작성주체:** 지방자치단체의 장 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)
- **작성기준일:** 매년 1월 1일
- **계획기간:** 5년간 (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)/※ 2008~2012
- **주요내용:** ①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 
 ② 신규인력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 
 ③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등

### 【※수립절차】



## II. 인력여건 및 전망

- 정원현황(\*국가직 3명 제외)/※2007. 12. 31 現在
  - 총 3,133명 ⇒ 일반직 1,586 /별정·정무직 44 /소방직 973 /기능직520
- 조직슬림화 방안에 따라 조직·정원을 경량화 하고 있으나, 중앙사무 지방이양, 경제·보건분야 행정수요 증가 등 불가피한 인력수요의 증가가 전망됨
  - 농수축산물 검사, 원산지 표시 단속, 질병관리, 기술사업화 업무추진, 과적차량 단속 등
- 특히, 소방직의 경우 중앙방침에 의한 ‘연차별 3교대인력 확충’ 및 ‘소방관서 신설’ 등에 따라 대규모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필요

## III. 계획수립 기본방향 및 원칙

- 인력증원은 경제·보건분야 등의 시민생활안정화 및 경제활성화 관련 시책 추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행정수요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력만 배정
-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기능 쇠퇴 및 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·대체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고, 부득이한 경우만 신규증원
- 운용계획은 매년 연동화하여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관리·운용
  - ※2007. 12. 31 조직개편시 정원을 기준으로 이후 5년간의 정원계획 수립



## IV. 인력조정 현황

### 1 연도별 인력조정 총괄

| 구분          | 증감계   | 2008년         | 2009년  | 2010년  | 2011년       | 2012년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조정결과<br>총계  | + 235 | + 1           | + 78   | + 112  | + 31        | + 13      |
| 소방직외        | 증원    | 11            | 15   | 13   | -           | -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01. 1 조직개편 11 | ○정보보호담당 설치 2<br>○기술사업화 업무 2<br>○원산지표시 단속 1<br>○장기미집행(공원)업무 1<br>○속기 업무 1<br>○농수축산물 검사 1<br>○인수공통전염병 검사 1<br>○과적차량 단속 6 | ○질병 검사 2<br>○농수축산물 검사 1<br>○과적차량 단속 6<br>○현안업무 4 |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감축    | 88            | 15   | 13   | -           | -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| 07. 1 조직개편 88 | ○민간위탁(만인산) 15  | ○한시정원(전국체전)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소계<br>(△77) | △ 77  | 0             | 0  | 0  | 0           |           |
| 소방직         | 312   | 78            | 78   | 112  | 31          | 13        |
|             | 증원    | 07. 1 조직개편 78 | ○소방직 3교대인력 78  | ○대덕특구소방서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대정119센터 31 | ○소방항공대 13 |

### 2 조정결과 연도별 정원현황

| 구분   |         | 총원    | 소방직 외 | 소방직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연도별  | 기준일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2007 | 12월 31일 | 3,123 | 2,150 | 973   |
| 2008 | 1월 1일   | 3,134 | 2,161 | 973   |
|      | 12월 31일 | 3,124 | 2,073 | 1,051 |
| 2009 | 12월 31일 | 3,202 | 2,073 | 1,129 |
| 2010 | 12월 31일 | 3,314 | 2,073 | 1,241 |
| 2011 | 12월 31일 | 3,345 | 2,073 | 1,272 |
| 2012 | 12월 31일 | 3,358 | 2,073 | 1,285 |

### 3 부서별 정원 요구에 따른 반영내역

| 부서명    | 요구인원 | 연도별<br>요구인원 | 담당업무 및 증원요구내역   | 반영인원       | 반영내역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계     | 계    | <b>293</b>  | <b>소방직 234, 소방직외 59</b>   | <b>262</b> | <b>소방직234, 소방직외28</b>      |
|        | '09년 | 112         | 소방직 78, 소방직외 34   | 93         | 소방직 78, 소방직외15             |
|        | '10년 | 132         | 소방직 112, 소방직외 20  | 125        | 소방직112, 소방직외13             |
|        | '11년 | 35          | 소방직 31, 소방직외 4  | 31         | 소방직 31, 소방직외 0             |
|        | '12년 | 14          | 소방직 13, 소방직외 1  | 13         | 소방직 13, 소방직외 0             |
| 정보화담당관 | 5명   | '09년 5명     | ○ 정보보호(보안)담당 설치<br>- 5급1, 6급1, 7급3(전산·통신)   | 2명         | ○ 전산·통신5급1명<br>○ 전산·통신6급1명 |
| 기업지원과  | 3명   | '09년 2명     | ○ 기술사업화 업무 추진인력 보강<br>- 행정6급1, 행정7급1  | 2명         | ○ 행정6급 1명<br>○ 행정7급 1명     |
|        |      | '10년 1명     | ○ 기술사업화 업무 추진 인력보강<br>- 행정6급1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유통과  | 9명   | '09년 3명     | ○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인력 보강<br>- 행정6급1, 농업6급1, 수의6급1   | 1명         | ○ 농업6급 1명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| '10년 3명     | ○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인력 보강<br>- 행정6급1, 농업6급1, 수의6급1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| '11년 3명     | ○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인력 보강<br>- 행정6급1, 농업6급1, 수의6급1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푸른도시과  | 11명  | '09년 6명     | ○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녹지) 관련<br>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<br>- 행정·녹지5급1, 행정6급1, 녹지6급1,<br>녹지7급1, 시설7급2 | 1명         | ○ 녹지7급 1명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| '10년 5명     | ○ 공원녹지 업무인력 보강<br>- 행정·녹지6급1, 녹지7급1, 시설7급1,<br>녹지8급1, 공업8급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부서명          | 소요인원 | 연도별<br>소요인원 |      | 담당업무 및 증원요구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인원 | 반영내역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|
| 의회사무처        | 1명   | '09년        | 1명   | ○ 속기 인력 보강<br>- 기능10급(사무원/속기)1                | 1명   | ○ 사무원10급 1명 |
| 보건환경<br>연구 원 | 18명  | '09년        | 4명   | ○ 질병관리 전담부서 설치<br>- 보건연구관1, 보건연구사3            | -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3명   | ○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인력 보강<br>- 연구사3                 | 1명   | ○ 보건연구사 1명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3명   | ○ 인수공통전염병 검사업무 인력보강<br>- 수의6급1, 수의7급1, 수의연구사1 | 1명   | ○ 수의7급 1명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0년        | 2명   | ○ 질병관리 업무인력 보강 : 보건연구사2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  | ○ 보건연구사 2명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3명   | ○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인력 보강<br>- 연구사3                 | 1명   | ○ 보건연구사 1명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1명   | ○ 인수공통전염병과 설치 : 수의5급·수의연구관1                   | -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1년        | 1명   | ○ 질병관리 업무인력 보강 : 보건연구사1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2년        | 1명   | ○ 질병관리 업무인력 보강 : 보건연구사1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            |
| 건설관리본부       | 12명  | '09년        | 6명   | ○ 과적차량 단속인력 보강<br>- 기능7급1, 기능10급5             | 6명   | ○ 전원 반영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0년        | 6명   | ○ 과적차량 단속인력 보강<br>- 기능8급1, 기능10급5             | 6명   | ○ 전원 반영     |
| 소방본부         | 234명 | '09년        | 78명  | ○ 소방공무원 3교대인력 확충<br>- 소방정1, 령2, 경5, 위5, 장이하65 | 78명  | ○ 전원 반영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0년        | 112명 | ○ 대덕특구소방서 설치<br>- 소방정1, 령3 경11, 위5, 장이하92     | 112명 | ○ 전원 반영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1년        | 31명  | ○ 대정119안전센터 설치<br>- 소방경1, 위3, 장이하27           | 31명  | ○ 전원 반영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'12년        | 13명  | ○ 소방항공대 설치<br>- 소방령1, 경3, 위3, 장이하6            | 13명  | ○ 전원 반영     |

## V. 일반·기능직 인력증원 검토내용

- ① 「정보보호(보안)담당」 설치
- ② ‘기술사업화 업무’ 인력 보강
- ③ ‘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’ 인력 보강
- ④ 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’ 인력 보강
- ⑤ ‘속기 업무’ 인력 보강
- ⑥ ‘질병조사·검사 업무’ 인력 보강
- ⑦ ‘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’ 인력 보강
- ⑧ ‘인수공통전염병 검사 업무’ 인력 보강
- ⑨ ‘과적차량 단속 업무’ 인력 보강

# 1 정보보호(보안) 담당 설치

## □ 기구·정원요구(정보화담당관)

- 사 유 :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, 침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, 사이버테러 예방·사이버 침해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
- 요구정원 : 5명(전산·통신 5급 1, 전산·통신 6급 1, 전산·통신 7급 3)

## □ 검토내용

-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필요
  - 전자정부 침해사고대응체계 구축 추진계획 통보 / 행자부 전자정부보안팀-3454(2006. 9. 11)호

### 【※타 시·도 정보보호 조직 현황】

| 구 분   | 합 계 | 일반직 정원 |    |    |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|----|----|----|-----|
|       |     | 5급     | 6급 | 7급 | 8급 |     |
| 서울특별시 | 5   | 1      | 1  | 3  | 1  |     |
| 부산광역시 | 12  | 1      | 7  | 2  | 2  |     |
| 인천광역시 | 5   | 1      | 1  | 2  | 1  |     |
| 충청남도  | 4   | 1      | 1  | 2  | 0  |     |

- 정보화담당관실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인력을 보장하여 전자정부 침해사고대응 전담조직(정보보호담당) 구성·운영이 타당

⇒ 2명 증원(전산·통신5급 1, 전산·통신6급 1)

## □ 연차별 정원확보 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2       | 전산·통신5급 1, 전산·통신6급 1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09 | 2       | 전산·통신5급 1, 전산·통신6급 1 |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보안·보호 대책 수립 추진 |

## 2 ‘기술사업화 업무’ 인력 보강

### □ 기구·정원요구(기업지원과)

- 사유 :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기술 유통 사업화,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제 구축, 전통기업의 IT융합,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
- 요구정원 : 3명(행정6급 2, 행정7급 1)

### □ 검토내용

- 기술사업화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 보강 필요

|  |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허기술 유통 사업화</li> <li>· 창업스쿨 및 대학생 창업지원</li> <li>· 이업종 교류 활성화 지원</li> <li>·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체제 구축</li> <li>·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개최</li> <li>· 전통기업의 IT융합과 애로기술 개선</li> <li>· 교육프로그램 운영</li> </ul> |
|--|---|

- 현재 기술사업화(품질관리업무 포함) 관련업무 인력 3명으로서는 기술사업화의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적정인력 보강이 타당

⇒ **2명 증원(행정6급 1, 행정7급 1)**

#### 【※ 타 시·도 품질관리담당 인력 비교】

| 구 분   | 합 계 | 일 반 직 정 원 |    |    |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|
|       |     | 5급        | 6급 | 7급 | 8급 |     |
| 부산광역시 | 3   | 1         | 1  | 1  |    |     |
| 대구광역시 | 3   | 1         | 1  | 1  |    |     |
| 인천광역시 | 3   | 1         | 1  | 1  |    |     |
| 광주광역시 | 3   | 1         | 1  | 1  |    |     |
| 울산광역시 | 3   | 1         | 1  | 1  |    |     |
| 대전광역시 | 3   | 1         | 1  | 1  |    |     |

※품질관리업무 : 전기, 승강기, 계량기, 제조물, 공산품 등의 품질관리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연 도 별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|             |
| 합 계   | 2       | 행정6급 1, 행정7급 1 | —           |
| 2009  | 2       | 행정6급 1, 행정7급 1 | 기술사업화 업무 보강 |

### 3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인력 보강

#### □ 기구·정원 요구(농업유통과)

- 사유 :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영업소 및 품목이 대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단속 업무량 증가
- 요구정원 : 9명(행정6급 3, 농업6급 3, 수의6급 3)

※ 농업유통과 담당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(20명)

| 직급 | 4  |   | 5  |          |          |   | 6  |    |    |          |   | 7  |    |    |          | 8  | 10 |
|----|----|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|----|----|----------|---|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|----|
| 직렬 | 기술 | 계 | 농업 | 행정<br>농업 | 농업<br>수의 | 계 | 농업 | 축산 | 수의 | 수의<br>수의 | 계 | 농업 | 행정 | 수의 | 수의<br>수의 | 행정 | 기능 |
| 정원 | 1  | 4 | 1  | 2        | 1        | 7 | 4  | 1  | 1  | 1        | 6 | 2  | 2  | 1  | 1        | 1  | 1  |

#### □ 검토내용

- '08. 7. 8.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되어 업무량 증가 되어 음식점 등 원산지 대상 업소 및 품목 증가
  - 대상업소 : 96개소(300㎡이상 음식점) → 20,401개소(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)
  - 대상품목 : 쇠고기 →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축산물가공품, 쌀, 배추김치
- 7대 특·광역시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단속 인력 현황 비교

| 구분    | 서울 | 부산 | 인천 | 대구 | 광주 | 울산 |
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인력(명) | 16 | 6  | 3  | 2  | 2  | 2  |

-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적정인력 보강 필요 ⇒ **1명 증원(농업6급 1)**

#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 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|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       | 농업6급 1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|
| 2009 | 1       | 농업6급 1      |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량 증가 |

## 4 '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녹지)' 업무인력 보강

### □ 기구·정원요구(푸른도시과)

- 사유 : 장기 미집행 시설(공원녹지) 토지매수 및 공원조성 등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
  - ※ 토지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건축행위허가 요구시 응해야 함  
⇒ 공공기능 위축 및 국민불편 가중
- 요구정원 : 11명(행·녹5급1, 행6급1, 녹6급2, 녹·시7급5, 공8급1, 녹8급1)

### □ 검토내용

- 신규업무 증가 및 기존 사무의 업무가 확대되므로 인력 보강 필요

|  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녹지) 토지매수 및 공원조성 / 신규업무 (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, 제48조, 제85조)</li> <li>• 구 위임사무 환수에 따른 업무량 증가(6개 도시공원 6,797천㎡) / 신규업무</li> <li>•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량(공원녹지기본계획, 도시녹화계획, 토지매수 등) 증가 (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~제19조, 제29조~34조) / 신규업무</li> <li>•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공원이용자 급증, 불법행위증가 등</li> </ul> |
|---|

- 현재 공원관리 관련업무 인력 4명(녹지5급1, 녹지6급2, 기능8급1)으로 도시공원 438개, 시설녹지 3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, 공원관련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
- 관련법상 2020년까지 공원조성 못할 경우, 도시공원 효력 상실되므로 위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정인력 보강 ⇒ **1명 증원**

#### 【※ 타 시·도와 인력 비교】

| 구분 | 대전     | 부산     | 대구     | 인천     | 광주     | 울산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조직 | 1과 5담당 | 1과 7담당 | 1과 5담당 | 1과 6담당 | 1과 5담당 | 1과 4담당 |
| 인력 | 22명    | 32명    | 28명    | 25명    | 25명    | 25명    |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연도별  | 소요인력 |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|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    | 녹지7급 1      | -               |
| 2009 | 1    | 녹지7급 1      | 토지매수, 보상 및 공원조성 |

## 5 ‘속기’ 업무 인력 보강

### □ 기구·정원요구(의회사무처)

- 사유 : 속기 업무량이 꾸준한 증가 추세이고, 속기직원의 유고시에 능동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 보강 필요
- 요구정원 : 기능 10급(지방사무원/속기) 1명

### □ 검토내용

- 의원 유급제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속기업무량 증가 추세

| 구 분     | 4대의회 전반기 | 5대의회 전반기 | 증 감      | 비 고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의 원 수   | 19명      | 19명      | -        |        |
| 속 기 사   | 6명       | 6명       | -        |        |
| 회 의 록   | 9,675쪽   | 11,776쪽  | + 2,101쪽 | 순수 속기량 |
| 1인당 속기량 | 1,612쪽   | 1,962쪽   | + 350쪽   |        |

- 시의원 및 집행기관에서 속기자료 조기활용 요구
  - 회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 활용을 위해 회기중에도 회의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
- 20~30대의 정치 관심고조 및 네티즌 의정 홈페이지 검색 급증
  - 정치관심 및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일반시민들의 관심급증으로 회의록 조기 필요성 대두
- 속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인력 보강⇒**기능10급(사무원/속기) 1명**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|                 |
| 2009 | 1       | 기능 10급(지방사무원) | 상임위원회 등 속기업무 보강 |

## 6 '질병조사·검사' 업무 인력 보강

### □ 기구·정원요구(보건환경연구원)

- 사유 : 전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질병조사·감시업무량 크게 증가  
(※2001년 12,857건⇒2007년 28,256건)
- 요구정원 : 8명(보건연구관1, 보건연구사7)/※ 질병조사과 설치

#### 【※ 미생물과 정원현황】

| 구 분  | 계 | 보건연구관 | 보건연구사 |
|------|---|-------|-------|
| 정·현원 | 5 | 1     | 4     |

### □ 검토내용

- 국가 전염병관련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증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확대    |
| -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(전염병발생감시) : 모니터링사업 신설   |
| -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(검진절차) : 확진시행 |

- 질병관리본부 2003년 확대개편(현, 6센터31팀中 3센터16개팀 연관)  
⇒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에서 관련업무 전부 수행
- 수년에 걸쳐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되는 분야이므로 타 시·도와 비교하여 적정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⇒ **2명(보건연구사)**

#### 【타 광역시 보건연구부 질병조직 / 미생물분야 조직현황 비교】

| 구 분             | 부 산 | 대 구 | 인 천 | 광 주 | 대 전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보건연구부 조직        | 2과  | 2과  | 2과  | 1과  | 1과  |
| 질병관리분야 인력(기능포함) | 16명 | 13명 | 13명 | 7명  | 5명  |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|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2명      | 보건연구사 2     | -                    |
| 2010 | 2명      | 보건연구사 2     | 질병 감시 및 검사·조사업무 인력보강 |

# 7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인력 보강

## □ 기구·정원요구(보건환경연구원)

- 사유 : 한우확인시험법 신설 등 신규 검사업무 증가 및 24시간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 보강
- 요구정원 : 6명(연구사)

### 【농수축산물검사소 정원현황】

| 구분 | 계  | 보건·수의연구관 | 보건연구사 | 보건·수의연구사 | 수의연구사 |
|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정원 | 10 | 1        | 6     | 1        | 2     |

## □ 검토내용

- 농수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

|  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(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)<br/>⇒ 도매시장 개설자의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 시행 ⇒ 2009. 1월 시행</li> <li>•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(농산물의 안전성조사)/2008. 2.29<br/>⇒ 경매전 안전성 조사업무의 시·도시자 공동사무 ⇒ 2002. 1월 이후 지속 강화</li> <li>• 식품위생법 제10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(원산지 등 표시)/2008. 6.20<br/>⇒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로 인한 신규 검사 업무 실시</li> </ul> |
|---|

- 경매전 상시 검사업무를 위한 야간 근무조 편성시 교대인력이 부족하므로 적정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 ⇒ **2명(보건연구사)**

### 【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조직현황 비교】

| 구분 | 서울  | 경기  | 부산  | 인천  | 대전 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인력 | 66명 | 28명 | 20명 | 14명 | 10명 |

## □ 연차별 정원확보 계획

| 년도별  | 소요인력 |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|            |
| 합계   | 2    | 보건연구사 2     | —          |
| 2009 | 1    | 보건연구사 1     | 교대근무 인력 보강 |
| 2010 | 1    | 보건연구사 1     |            |

# 8

## ‘인수공통전염병’ 검사 인력 보강

### □ 기구·정원요구(보건환경연구원)

- 사유 : 광우병, 브루셀라병,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
- 요구정원 : 4명 (수의 5급·연구관 1, 수의6급 1, 수의7급 1, 수의연구사 1)
  - 부서신설 : 가축위생연구부(검사과, 시험과) ⇒ 동물위생연구부(축산물안전과, 동물질병진단과, 인수공통전염병과)

### □ 검토내용

- 인수공통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성검사 업무량 증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의 인력보강 필요

- 소해면상뇌증(BSE, 일명 광우병) 청정국 인증을 위한 검사 강화
  - 기립불능소 및 노령소 등에 대한 검사 강화 (연간 780점 ⇒ 1,400점)
- 소 브루셀라병 검사업무 증가('05년 1,374두 ⇒ '07년 5,290두) 및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예찰, 검진, 소독 등 업무 신설
-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회충 등 기생충란 검사업무 신설('06년)
- 한우 유전자 검사업무 신설('08년) / 한우 감별 및 동일개체 확인
  - 광우병 우려로 인한 한우감별 관련 민원 증가 (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등)

-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·도에 별도의 전담부서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부서신설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나, 업무량 증가 추세에 따라 적정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 ⇒ 1명(수의7급)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|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       | 수의7급 1      | -                |
| 2009 | 1       | 수의7급 1      |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인력 보강 |

# 9 ‘과적차량 단속’ 인력 보강

## □ 기구·정원요구(건설관리본부)

- 사 유 : 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 및 복무만료에 따른 단속인력 감소로 대체 인력 총원 필요
- 요구인원 : 12명(기능7급 1, 기능8급 1, 기능10급 10)

### 【단속담당 직급·직렬별 현황】

| 업무구분 | 직 렬  | 현인원 | 업무구분 | 직 렬   | 현인원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단속담당 | 공업6급 | 1   | 단속반장 | 기능7,8 | 2   | 단속원 결원시<br>업무보조 3인<br>대체투입 |
| 수사업무 | 공업7급 | 1   | 단속요원 | 공익근무  | 1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영허가 | 공업8급 | 1   | 업무보조 | 공익근무  | 3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검토내용

- 병무청소집과-6502(07.07.13) : 차량단속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정중단  
- 현 2개 단속반 14명중 12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연차적 인력 감소  
※ 년도별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 현황

| 년도별 | 2008년도 |     | 2009년 |    |     | 2010년도 |    | 비 고 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|------|
|     | 11월    | 12월 | 4월    | 6월 | 11월 | 1월     | 3월 |      |
| 인 원 | 2      | 1   | 3     | 1  | 3   | 2      | 3  | 총15명 |

-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인력 보장 ⇒ **기계원 12명**

| 구 분   | 합계 | 과적차량 단속 및 피의자 수사 |     |    |     |    | 제한차량허가 |     | 비 고 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|------|
|       |    | 일반직              | 기능직 | 청경 | 기간제 | 공익 | 일반직    | 기능직 |      |
| 부산광역시 | 64 | 5                | 23  | 3  | 26  | 3  | 1      | 3   | 대체 중 |
| 인천광역시 | 47 | 4                | 26  | -  | 13  | 3  | 1      | -   | "    |
| 대구광역시 | 20 | 3                | 8   | -  | 2   | 6  | 1      | -   | "    |
| 광주광역시 | 14 | 2                | 7   | -  | 3   | 1  | 1      | -   | 총원요청 |
| 대전광역시 | 20 | 2                | 2   | -  | -   | 15 | 1      | -   | "    |

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 적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2      | 기능7급 1, 기능8급 1, 기능10급 10 | -                  |
| 2009 | 6       | 기능7급 1, 기능10급 5          | 단속인력 대체총원<br>(기계원) |
| 2010 | 6       | 기능8급 1, 기능10급 5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 Ⅵ. 소방직 인력증원 검토내용

- ① 소방공무원 '3교대 근무' 인력 확충
- ② 『대덕특구소방서』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
- ③ 「대정119안전센터」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
- ④ 「소방항공대」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

# 1 소방공무원 '3교대 근무' 인력 확충

## □ 기구·정원요구(소방본부)

- 사유 : 중앙방침에 따라 “24시간 격일제” 근무형태의 외근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인력 확보
- 요구정원 : 78명(소방정1, 령2, 경5, 위5, 장이하65)
  - 2009년 : 78명(소방정1, 령2, 경5, 위5, 장이하65)

## □ 검토내용

- 「주 40시간 근무」 실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충
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639(2005.3.8)호 「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」
  - 3교대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
  - 3교대 근무를 위한 총인력 규모는 2004.7월말 정원의 150%(795×150%=1193명)

- '09년까지 인력 확보 후 외근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면 실시
  - ※ 부족인원은 관서별 조직체계를 재점검하여 인원조정 배치

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 적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         |          |
| 합계   | 78      | 소방정1, 령2, 경5, 위5, 장이하65 | -        |
| 2009 | 78      | 소방정1, 령2, 경5, 위5, 장이하65 | 3교대 근무인력 |

## 2 『대덕특구소방서』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

### □ 시설개요

- 위 치 : 유성구 관평동 333~336(임시지번 I 3-1-2)
- 규 모 : 지하1, 지상3층 / 연면적 4,950㎡(1,500평) / 사업비 : 96억원
- 공사기간 : '10.4 ~ '10.11 / ※ 2010.12월 개서 계획

### □ 기구·정원요구(소방본부)

- 사 유 : 대덕테크노밸리 및 3·4산업단지 대형공장 화재진압 인력 확보
- 요구정원 : 112명(소방직)
  - 2010년 : 112명(소방정1, 소방령3, 소방경11, 소방위5, 소방장이하92)

### □ 검토내용

- 대덕특구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업체 1,000개 및 아파트(10,650세대)의 수용인구가 83,000명 정도 예상되며, 현재의 인근소방서와 원거리로 대형화재시 강력한 초동진압이 어려우므로 대형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덕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 설치 필요
  - ⇒ 본서(본서·직할119안전센터·구조대) 인력 우선확보 후 소방서 설치계획 확정시 기존 관할 소방인력과 통할·조정하여 일반파출소 신규인력 추가 확보
- 타 서와 비교 적정인력 증원(3교대근무 기준)
  - 총 112명 확충 ⇒ 본서 35, 직할119안전센터 61, 구조대 16

|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•                      | 소방서 : 자치구단위 설치(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 이상일 경우 추가설치 가능)<br>※공업단지·주택단지 등 대형화재위험 및 소방수요 급증지역에 설치 가능 |
| •                      | 119안전센터 : 인구 3만명 이상   |
| •                      | 인 력 : 소방서 본서(67명), 119안전센터(직할 64명 / 일반 31명), 구조대(25명)<br>※장비별 기준에 따라 추가                 |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12     | 소방정1, 령3, 경11, 소방위5, 장이하92 | —            |
| 2010 | 112     | 소방정1, 령3, 경11, 소방위5, 장이하92 | 대덕특구소방서 운영인력 |

### 3 「대정119안전센터」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

#### □ 시설개요

- 위 치 : 유성구 대정동(서남부신도시 내)
- 규 모 : 지하1, 지상3층 / 연면적 759㎡(230평) / 사업비 20억
- 공사기간 : '11.3월~'11.11월 / '11.12월 개소 계획

#### □ 기구·정원요구(소방본부)

- 사유 : 서남부신도시 개발에 따른 119안전센터 설치
- 요구정원 : 31명(소방경1, 소방위3, 소방장이하27)  
- 2011년 : 31명(소방경1, 소방위3, 소방장이하27)

#### □ 검토내용

- 서남부신도시 개발이 2011.6월 완료될 경우  
면적 183만평, 세대수 24,000 인구 약 7만명으로 소방수요 급증 예상
-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 
-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: 광역시 인구 3만명 이상
- 소방력기준(3교대근무 기준)에 따라 **총 31명 확충 ⇒소방경1, 소방위3, 장이하27**

#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31      | 소방경1, 소방위3, 소방장이하27 | -              |
| 2011 | 31      | 소방경1, 소방위3, 소방장이하27 | 대정119안전센터 운영인력 |

## 4 소방항공대 설치에 따른 인력 확보

### □ 기구·정원 요구(소방본부)

- 사유 : 고층건물 인명구조, 산불진화, 항공관련 시정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항공대 설치
- 요구정원 : 13명(3교대근무 인력)
  - 2012년 : 13명(소방령1, 경3, 위3, 장이하6)

### □ 검토내용

- 건물의 고층화, 대형화에 따른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용 헬기필요
- 대형재난 발생시 공중에서 현장지휘 및 통제
- 산불진화 및 재난발생시 방송 등 활용
-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/ 시·도에 소방항공대를 설치
- 타 시·도와 비교하여 적정인력 증원⇒**13명(소방령1,경3,위3,장이하6)**

#### 【※ 타 시·도와 비교】

| 구분 | 계   | 중앙 | 서울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광주 | 울산 | 경기 | 강원 | 충북 | 충남 | 전북 | 전남 | 경북 | 경남 |
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대수 | 25  | 2  | 3  | 2  | 2  | 1  | 1  | 1  | 3  | 2  | 1  | 1  | 1  | 2  | 2  | 1  |
| 인력 | 217 | 19 | 25 | 18 | 16 | 13 | 7  | 10 | 22 | 19 | 9  | 8  | 9  | 14 | 14 | 14 |

※ 헬기 미보유 시·도 : 대전, 제주

### □ 연차별 정원확보 계획

| 년도별  | 소 요 인 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| 계       | 직급·직렬별 상세내역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합계   | 13      | 소방령1, 소방경3, 소방위3, 소방장이하6 | —          |
| 2012 | 13      | 소방령1, 소방경3, 소방위3, 소방장이하6 |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|

## VII. 인력감축 내용

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(감축)

② ‘한시정원’ 감축

# 1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(감축)

① '08. 1. 1 조직개편 ⇨ 11명 증원(3,123명 → 3,134명)

- 일반직(연구·지도직 포함) : + 12명 (1,586명 → 1,598명)
- 소방직 : ±0 (973명)
- 기능직 : △1명 (520명 → 519명)
- 정무직 : ±0 (1명)
- 별정직 : ±0 (43명)

② '08. 7. 1 조직개편 ⇨ 10명 감축(3,134명 → 3,124명)

- 일반직(연구·지도직 포함) : △62명 (1,598명 → 1,536명)
- 소방직 : + 78명 (973명 → 1,051명)
- 기능직 : △23명 (519명 → 496명)
- 정무직 : ±0 (1명)
- 별정직 : △3명 (43명 → 40명)

③ '09. 1. 1 조직개편계획(민간위탁)

⇨ 15명 감축 (3,124명 → 3,109명)

- 일반직(연구·지도직 포함) : △12명 (1,536명 → 1,524명)
- 소방직 : ±0 (1,051명)
- 기능직 : △3명 (496명 → 493명)
- 정무직 : ±0 (1명 → 1명)
- 별정직 : ±0 (40명)

## 2 ‘한시정원’ 감축

### □ 한시정원 현황(13명)

| 부서명         | 정원 | 정원내역   | 시행시기<br>(공포일) | 한시기한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| 13 | 일반직 12, 기능직1   | —     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|
| 전국체전<br>기획단 | 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4급 1명</li> <li>- 행정5급 2명</li> <li>- 행·시·공5급 1명</li> <li>- 행정6급 3명</li> <li>- 행·시·공6급 1명</li> <li>- 시설6급 1명</li> <li>- 행정7급 1명</li> <li>- 통신7급 1명</li> <li>- 행·전7급 1명</li> <li>- 기능(사무원)8급 1명</li> </ul> | 2007. 7. 1    | 2010. 6. 30 | 기구폐지<br>및<br>정원삭감 |

### □ 연차별 정원감축 계획

| 합 계 | 감 축 인 원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비 고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    | 2008   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    |
| 13  | —       | —    | 13   | —    | —    |     |

## VIII. 참 고 사 항

### 1 인건비 현황